

연구총서 99-25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최 의 철

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코소보와 동티모르의 '인종청소'는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방대하고 지속적인 반인륜적 행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하고 인도적 개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에서 인권문제가 국가주권의 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인 주권이 국가주권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개념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자유가 없는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에 힘입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인간은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정치적·사회적 권리와 자율)을 보호하고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인간은 피동적인 지배대상으로부터 정치적·시민적 권리 신장을 추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 동서 냉전시대에도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은 지속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제정 등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서 냉전시대에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인권신장에 대한 노력은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종식후 좌·우 이념대립과 편견이 극복됨으로써 인권의 범주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과학, 특히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복제인간 가능성 등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과거 사회주의와 나치즘이 기도했던 인간의 사회적 조작에 대한 유혹을 증대시키고 있어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냉전종식후 민족집단과 소수민족 등의 자결권 주장과 무력투쟁은 국제질서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국제인권규약 등) 인권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었다. 또한 20세기 사회기구의 소산인 시민사회, 특히 인권 관련 국제NGO들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산하 인권기구들의 집행 능력이 제약되어 있고 국제 NGO들의 활동은 항의와 선전에 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문제가 국가 주권에 속하는 관례와 사고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인도적 개입의 거부로 세계도처에서 분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른 난민도 25백만 이상이 되고 있다. 테드거의 연구에서도 190개 국가중 120개국 국가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민족집단 내지 소수 민족이 존재하고 체계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간의 갈등은 21

세기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인도적 개입에 있어서 유엔은 재정적 기반 약화와 독자적 평화유지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있어야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 유엔안보리는 이념적 색채는 사라지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구가 영향력 확대의 장으로 유엔을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인도적 문제로 유엔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장애요인이 있다. 코소보 사태는 미국과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보다는 지역적 접근을 선택하고 ‘인종청소’를 중단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예외적인 전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코소보’사태는 유엔의 위임 없이 강대국이 인도적인 문제를 이유로 소위 ‘불량배’ 국가에 독자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적 참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방법도 미국의 지도력, 유엔의 책임, 지역책임 등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주권과 소수민족의 자결권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냉전 종식후 인권문제가 국가 주권사안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한편,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국제인권기구들이 대표적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와 국가주권간에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과 국가주권은 어느 정도 타협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심각한 반인륜적인 행위가 특정 집단에 계속될 경우에는 자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완전한 국가주권은 이상형으로 국가주권은 많은 방법으로 타협되고 국

제규범, 국제현장,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계속 축소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참상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문제가 배타적인 국가 주권 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엔은 '평화의 위협'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유엔도 '개인주권'을 강조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지역 강대국 및 지역안보기구들도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 냉전종식후 안보는 냉전시 지정학 모델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인간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하는 보다 인간적인 국제안보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냉전시 동·서 양대 진영의 국가들은 안보와 인권을 반대되는 개념 또는 안보를 위해서 인권을 희생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냉전종식 후 세계각국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안보와 인권이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물론 냉전시 헬싱키 협정도 동·서간에 인권과 안보의 중요성을 합의한 협정이었다.

현재 인권문제와 국가안보를 동일시하는 국가는 없지만 양자간의 갈등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를 주장하고 ① 인간안보는 빈부국 모두에게 적용하고, ② 인간안보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보호하고, ③ 인간안보는 초기예방이 효율적이고, ④ 인간안보는 인간위주로 시장과 사회적 기회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적 협력과 예방외교 및 유엔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 악화로 탈북자 및 아사자가 증대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개시되면서 고조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당분간 대북인권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유럽연합, 및 국내의 NGO들의 활동은 국제적 여론조성에 기여하고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국제사회는 간헐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나, 199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유엔이나 국제 NGO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1994,1995,1997)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되었고, 인권위원회(1997)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권소위원회는 해외로의 이동과 자유를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국제인권규약 B규약의 탈퇴를 선언(1997.8)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가결된 1년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재신설하는 등 형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금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회의를 비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유엔이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다루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조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북한인권실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해 왔다. 곧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국가로 인권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존경을 강요받고 있다. 김정일은 세습 후에도 완전한 권력집중과 사회의 완전한 통제 및 주체사상에 규정된 사회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념의 특징은 인권이 지도자의 시혜로 간주하고, 계급성을 띠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의무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법체계 부재 등으로 개인의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인권의 주요실태를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경제난과 식량난 악화로 사회일탈 행위가 증대하자 체제 수호 차원에서 극단의 조치로 공개처형을 단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반대하는 정치범은 물론 체제비판이나 경제사범까지 공개처형에 희생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사평론' 편집장인 뻬에르 리글로는 「공산주의 흑막」(1997.1)에서 북한정권수립이후 노동당 숙청으로 10만이 숨졌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 여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이다. 이곳은 반김일성 및 반체제 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고 황장엽은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1월 22일 10개의 수용소에 20만 7천 여명이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무성 「'98 각국인권보고서」에서도 15만~20만의 정치범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의 충성과 동원을 유발시키고 주민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국가가 식량배급을 책임지고 있다. 곧 식량배급은 사회주의

체제의 요체인 것이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 악화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배급표의 기준량이 무시되고,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 체제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식량을 자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황장엽은 1996년 아시아가 1백만 명에 이르는 중앙당 보고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의 아사자에 대한 추정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사자는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이혼이 늘고 결혼을 기피하고 집 잃은 고아들이(꽃제비) 늘고 있다. 당분간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 개혁이 없는 한 매년 100만 톤 내지 2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00년에도 129만 톤의 추가 식량원조가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농업체제는 영양실조에 걸린 농업인력으로 유지될 수 없어 기근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인도적 사안으로 북한이탈주민문제, 남북억류자, 국군포로와 유해송환, 이산가족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와 같은 문제를 부인하거나 이산가족문제는 경제지원과 연계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당분간 문제해결 전망은 높지 않다.

3. 대북인권 정책 추진방향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현재의 남·북 관계와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인권개선 압력을 행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묵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인권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정치적 리더쉽 요망,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모색, 다자적 접근,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개선 요구 등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기본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쉽은 북한인권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인 여론조성과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과제이고 북한도 경제적 지원과 연계하고 있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는 인도적 문제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 남북간에 협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이 문제를 체제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좀더 단계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북한의 민주화나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례에 비추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인권개선을 위한 요구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인도적 사안 우선 해결, 정치범수용소의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등을 우선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거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국제사례에 비추어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은 다자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유엔과 국제NGO 및 지역기구들을 활용하고 국제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북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유엔이 북한인권을 적극 다루도록 대유엔 인권외교를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는 미국 CNN과 국제미디어들이 지역인권 문제를 세계화하여 인도적 개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미디어의 활동을 적극 지원, 활용하여야 하겠다.

- 목 차 -

I. 서 론	1
II.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3
1. 국제정치 변화와 인권	3
2.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7
가. 인권보호의 제도화와 문제점	7
나. 인권문제와 국제적 개입	13
3. 안보와 인권	22
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인권	22
나. 인권과 안보의 상호관계	25
다.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28
III.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31
1. 국제정치와 북한인권	31
2. 국제사회의 반응과 북한의 대응	33
3. 북한인권문제	36
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38
나. 북한인권의 주요실태	49
다. 인도적 문제	65
IV. 대북인권 정책 추진방향	68
1. 기본방향	68
가. 정치적 리더쉽 요망	69
나.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모색	70

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개선 요구	70
라. 다자적 접근	71
2. 국내적 접근	71
가. 대통령의 리더쉽	71
나.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72
다. 국내 인권 NGO들의 활성화	76
3. 국제적 접근	77
가. 다자적 접근	77
나. 미디어의 적극 활용	79
V. 결 론	80
참고문헌	85

I. 서 론

1999년 인권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이슈로 등장하였다. 코소보 사태는 나토의 무력개입으로 ‘인종청소’가 금지되었다. 동티모르 사태도 다국적군이 파견되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과도조치로 유엔은 “유엔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를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국가주권보다 개인주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은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금년 민간인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인권보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단체들을 격려한 셈이다.

과거 북한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더불어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1994)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금년에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199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NGO(비정부기구) 세계대회는 NGO들간의 단결과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북한인권·난민문제를 다루는 첫 국제회의였다. 지난 50년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정상으로 침묵을 지켜왔다면 이번 회의가 그 침묵을 깨뜨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2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생각한다. 이 회의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20세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파괴된 세기이며, 이같은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북한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잭 랜들러원 미네소타 인권 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NGO의 접근을 막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NGO들의 활동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에서 국제 미디어는 지역인권문제를 국제화하고 지역강대국들의 인도적 개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변화를 조명해 보고,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냉전종식후 국제정치 변화와 인권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은 국제정치에서 주요의제로 부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의 주요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은 다분히 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1. 국제정치 변화와 인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인권획득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사회적·정치적 권리와 자율)을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면서 변해 왔다.

과거 정치는 절대군주의 독재와 종교적 열정으로 행해졌다. 특히 중세기는 종교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였다. 개인은 왕정 독재나 종교의 자의적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고되고 있는 ‘인종청소’는 B.C. 8세기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세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중세기의 ‘인종청소’는 종교적 청결로 시작되어 이교도나 무신도 등 소수민족을 겨냥해서 실행되었다. 여기서 ‘인종청소’란 바람직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로 정치·전략·이념적인 고려 또는 이들의 복합적 요인을 내세워 일정영토에서 제거 또는 축출하는 것이다.¹⁾

한편 근대유럽에서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로부터 1815년 비엔나 회의까지 종교적으로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유럽과 오스만 터키제국에서도 타교도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두었다. 근대국가제도를 창설하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도 종교적 관용을 보장하였고, 1815년 비엔나 협약에서도 소수민족

1) Andrew Bell-Fialkoff, "A brief History of Ethnic Cleansing," *Foreign Affairs*, Vol. 73, No. 3 (Summer 1993), p. 110.

의 권리를 인정하였다.²⁾ 물론 이것은 종교전쟁으로 인한 대규모적인 인종청소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1776) 및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등은 인간이 피동적인 지배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독립과 제퍼슨 대통령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 주장은 노동자 계급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권리를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치적 투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후 베르사이유 조약에서는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배가되었다. 각국은 소수민족 권리조약에 비준하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약속이 선언되었다. 윌슨 미대통령의 민족자결선언이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후 나치즘과 파시즘 등 극열한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국가정화를 위하여 외부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추방, 이주 및 집단학살로 유대인의 근절을 목표로 하여 대규모의 인종청소를 단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유대인의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권보호의 초점이 과거의 소수민족에서 개인의 보호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치독일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을 확장의

2) Stephen D. Krasner and Daniel T. Froats, "Minority Rights and the Westphalian Model," in David A. Lake and Donald Rothchild (eds.), *The International Spread of Ethnic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231~233.

구실로 삼았다. 그결과 동맹국들은 전후 질서 구축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소수민족 보호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수민족 문제는 인권문제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지도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미국의 지도이념인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유엔현장에 소수민족 문제가 거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 2차대전중 나치독일의 유태인 학살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1948)과 「국제인권규약」(1976)에서 개인의 인권 존중과 소수민족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은 지주 및 자본가 계급에 대한 청소를 자행하였다.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처형은 '인종청소'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동·서 냉전은 체제경쟁을 위해서 인권문제를 도구로 이용하였다. 인류는 20세기 대부분을 전체주의와의 투쟁으로 인권이 중심적인 도덕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주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대중의식 제고, 매스컴에 의한 대중 동원이 증대됨으로써 인권이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곧 대중의 정치의식 고양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힘을 동일시하고, 나아가서 인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였다.³⁾

소련의 공산주의는 인위적으로 정치·사회를 조작하여 유토피아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강요된 유토피아는 계급을 기초로 적을 제거함으로써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련 전체주의 모델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인권의 중요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냉전종식후 인권과 관련한 국제정치의 도전은 세가지 측면에서 고

3) Zbigniew Brezezinski, "New Dimension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Current* (September 1996), p. 33.

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냉전종식후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권의 보장은 개인차원에서 제도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헌팅턴의 “제3의 물결”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예고하고,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민주주의는 유일한 대안이며 역사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 제도는 다른 제도와 전쟁가능성이 적어서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전통적인 딜레마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최근 동양권의 일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서구식 접근을 교조주의적이고 편협주의(parochialism)라고 비판하고 있다.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총리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민주주의 확산”은 편협하고, 자기 도취적이며 나아가서 위선적이라 비판하고 조화, 권위, 사회응집력에 기초한 집단적 사회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비판은 민주주의 확산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헌팅턴이 주장하는 “문명의 충돌”은 아니지만 동양권 또는 회교권과의 마찰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 확산은 인간개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의 발전과 그 이용 문제는 인간개인의 실제적 변화(alteration)와 그 기술의 불평등한 사회적 이용 가능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혁명 은 사회적 조작에 대한 유혹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혹은 이미 전체주의에서 남용되는 전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사회조작의 유혹은 인간을 조작하려는 유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현대과학은

4) Ibid, p. 31.

기대와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의 발달은 '질병과 노령으로 인한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위협성은 인간을 비인간화, 곧 각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기계화할 가능성도 있다. 곧 우리는 인간의 개체성과 신비스럽고 독특한 인간성을 탈취당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이 재생산되거나 단순한 피조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맑스의 계급분리에 의한 지배와 히틀러의 우성인종 사고와 결합된 세계지배의 위협성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과 잠재력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와 같은 도전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윤리적 합의와 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심스러운 정책결정이 민주적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셋째, 냉전종식후 인종간의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냉전시기에 잠재되었던 소수민족 문제는 냉전종식으로 재현되고 이러한 갈등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유고사태와 같이 국내분쟁이 국제불안을 일으키고 자원과 생명이 소요되는 전쟁에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휩쓸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인도적 참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가. 인권보호의 제도화와 문제점

제2차 세계대전후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증대되

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현장에서 인권존중을 강조하고 1948년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서문에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을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토대를 일반 사상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고 있으므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제와 탄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긴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계기로 인권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국제화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을 보장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로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국제인권규약」(1966)을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서방측이 중요시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공산권이 선호해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976년 1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CESR, 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같은 해 3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 및 ICCPR의 선택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ICESR과 ICCPR에 가입한 국가수는 1998년 9월 현재 각각 140개국, 131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약의 제정은 동·서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졌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시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특별 계층에 속하는 권리로 보편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⁵⁾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도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요한 인권으로 간주하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평등분배 우선 실현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북한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좌·우 이념대립은 양자의 수용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으로 좌·우 이념의 편견이 극복됨으로써 인권의 범주는 확대되고 있다.

유엔 산하에 조직된 인권관련 각종기구는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이다.

또한 유엔은 세계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90여개의 주제별 인권규약이 구속력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규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등 6개이다. 또한 6개 규약에 의거하여 각종 규약심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외에도 지역별로 국제협약에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다. 한편, 각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00여개의 NGO가 회원제도를 갖추고 국제

5) Maurice Cranston, *What are Human Rights?* (New York: Basic Books, 1964), p. 54.

6)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 31.

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협의자격을 취득한 NGO수만도 1,000여개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 NGO는 유엔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 자격은 포괄적 협의자격, 특정분야 협의자격, 특정문제 자문자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⁷⁾

이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NGO수는 700~800개로 추산되며, 약 110 여개 NGO가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국제사면위원(Amnesty International: AI), 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s Watch), 국제법률가협회(ICT) 등이 대표적인 민간인권단체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규약들은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결코 서구국가들이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고 국제사회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실정법적으로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고, 각종 인권규약도 그 집행능력에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1503절차에 의한 비공개 심의 및 1235절차에 의한 공개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503 절차는 '극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침해에 지속적 행위'로 판단되는 통보에 관해서 비공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권위원회는 사안들을 계속 논의할 것인지 또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룰 것인지 결정한다.⁸⁾ 당사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출두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엔인권위원회의 1503 절차는 인권유린국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

7)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4.

8) A. H. Robertson and J. G. Merrills, *Human Rights in the World*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pp. 79~80.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1974년 칠레의 사례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칠레의 인권 상황과 관련, 유엔은 특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칠레의 고문과 반인륜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1974년 유엔 총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1975년 5명의 특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칠레정부에 모든 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칠레정부는 처음에는 특별실무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으나, 결국은 거부하였다. 특별실무위원회는 칠레 인권조사를 유엔 총회에 매년 요구하여 마침내 1978년 칠레정부는 2주간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의 조사를 허용하였다.

특별실무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들과 조직들을 만나고 구금소와 감옥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특별실무위원회는 칠레에 빈번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으나 인권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79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칠레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도록 칠레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실무위원회의 임무를 종식시켰고 특별보고관이 매년 인권실태를 유엔 총회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실무위원회의 절차는 느리고 장애요인이 많으나 유엔이 회원국에 인권실태를 조사한 첫 사례가 되었다.⁹⁾

이와 같이 유엔이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 조사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없는한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조사절차도 느리고 인권실태 개선에 극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서도 유엔인권기구들의 북한

9) Ibid., p. 86.

인권실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제인권 민간단체(NGO)들의 인권운동도 항의와 선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냉전종식후 민족집단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그 결과는 세계도처에서 국내 및 국제안보의 주요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은 인권침해의 제일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3년에 2천 5백만명 이상이 민족갈등으로 난민이 되었다.¹⁰⁾ 민족갈등은 유고와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를 불안정하게 하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도 인종갈등과 불평등은 미국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은 분리를 원하고 있다. 서구유럽국가에서도 제3세계에서 이민해 온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족간 인종간 갈등은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Ted Robert Gurr의 1980년과 1990년대 연구사례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1/6이 292 집단에 속하여 체계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0개 국가중 120개 국가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특히 사하라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¹¹⁾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심한 곳은 중동·북아프리카이지만, 1990년대에는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의 소수민족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고,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는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민족집단이나 소수민족문제로 인한 갈등은 증가추세에 있는 바,

10) Ted Robert Gurr, "Communal Conflicts and Global Security,"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p. 212.

11) *Ibid.*, p. 215.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비폭력 정치시위는 두배가 증가하고 반란 등 폭력시위는 4배 증가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갈등 해소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정치개혁이 갈등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강대국들의 개입이 중요한 갈등해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³⁾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해소에서의 미국의 역할, 레바논 내전에서 시리아의 역할, 걸프전의 결과로 미국의 쿠르드족 보호, 코소보 사태에서의 나토(NATO) 개입, 동티모르의 사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 파견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민족집단 및 소수민족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련에서 독립된 공화국들과 서남 아시아의 민족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¹⁴⁾

나. 인권문제와 국제적 개입

냉전종식후 1990년대에 경제·정치적으로 후진국들이 인권유린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소말리아, 르완다, 체첸, 보스니아, 코소보,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수단, 동티모르 등이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거나 소련과

12) 위의 글, p. 214. 테드 거는 민족집단은 국가 팽창으로 자율권을 잃었으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소수민족은 사회내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위와 신분의 유지 및 상승을 추구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Ibid., p. 216.

14) Ibid., p. 216.

유고의 붕괴로 생겨난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국가들의 인권문제는 냉전종식후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국제 NGO의 활동 강화, 남아프리카 인종분리 반대운동의 성공, 동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투쟁으로 국제인권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원기반이 조성되어 인권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과 유엔 안보리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결프전으로 고조되었으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역할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현장은 국내문제에 유엔의 권위가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7항) 주권행위는 집단개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없는 약소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유엔은 이들 강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유엔의 위임을 이용하여 결프전과 같이 일방적인 군사적 행위를 전개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엔의 역할과 관련, 두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과거 유엔의 사무총장들은 유엔 인권규범에 준거하여 주권국가를 제약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유엔의 평화와 안보의 역할확대를 주장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유엔의 결프전 역할은 적합한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익이 유엔목적과 합치될 때 가능하였고, 이것도 유엔안보리의 불확실한 위임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냉전종식후 유엔안보리의 이념적 색채는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영향력의 확대의 장으로 유엔안보리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문제로 유엔안보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990년대초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인권을 적극 옹호했으나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부시 행정부때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으로 미군이 파견되었으나 18명이 사망함으로써 이후 클린턴정부에서는 인도적 참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원이 없는 유엔의 신뢰도도 약화되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사태에서도 유엔의 임무는 실패하여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보스니아사태는 미국의 중재로(Dayton Accord, 1995.11) 일단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유고에 의한 코소보의 인종청소는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미국과 나토동맹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역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밀로세비치 유고대통령이 나토평화유지군의 수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자 나토는 78일간의 공습으로 유고를 굴복시켰고, 코소보의 나토국제평화집령군의 역할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계속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코소보사태는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나토동맹의 지역군 행동은 유엔의 무력사용의 허락없이 행해진 것이다. 둘째, 미국이 국제테러국가나 '불량배' 국가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국제질서에 위협적인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¹⁵⁾

동티모르 사태는 유엔의 활동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호주의 책임하에 한국을 포함한 지역국들의 다국적군 파견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유엔이 과도정부기구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적 참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방법도 미국의 일방적 행동, 유엔의 책임, 지역책임에 의

15) Richard Falk, "The New Interventionism and the Third World," *Current History*, Vol. 98, No. 63 (November 1999), p. 372.

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위기의 공통 요소는 국가 주권 존중과 인권이 유린된 인간의 자결권간에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내 정치소요가 세계질서의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기본원칙에 기인하고 있다. 곧 주권국가의 영역권과 자결권간에 빚어지는 갈등이다. 이와 관련, 냉전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동·서간에 잠정협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기존국가에서 분리·독립하려는 자결권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결권은 탈식민 과정에서 동·서와 제3세계 지도자들이 식민지 시대의 국경을 독립과정에서 수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역권에 도전하는 분리독립운동은 저지한다는 방침이었다(예외: 방글라데시).

둘째, 이와 같은 자결권의 제약은 효력있는 국제법으로 수용되었다. 1970년 유엔총회는 “국가간 우호관계에 관한 국제적 원칙선언”에서 이를 지지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문제도 국가주권 사안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협은 도덕적인 후퇴로 나치독일에서 유대인이 인종청소를 당해도 국가주권 곧 영역권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를 간과한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그러나 냉전종식으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경직된 사고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발탁국가들이 독립하였고 구소련연방의 공화국들이 독립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은 자결권이 일정 조건에서 실현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국가가 붕괴하는 경우이거나,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

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고사태는 덜 타협적인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예이다. 최근 자결권은 토착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보호와 소수민족의 권리보호와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결권은 국가나 소수민족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해석의 차이는 존재한다.

냉전종식으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보다 약화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유라시아국가들내에서 독립운동이 심화되고 있다. 서구는 제3세계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제3세계에서 시민사회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유고는 반소련군으로 유럽방위에 도움이 되어 서구가 지원하였으나 냉전종식은 이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고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다양한 반세르비아 민족주의가 표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대중국견제라는 전략적 효용성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가치 감소로 인권문제의 고려가 증대되고 권위적이고 부정한 정부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약소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특정인종과 종교에 호소하여 극단주의 운동이 세력을 확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의 권위 약화와 지정학적 변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 세계화의 충격, 다양한 인종들의 목적추구와 민족주의 대두 등이 냉전종식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한편,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북한, 쿠바, 이디오피아 등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북한의 자유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98-99년도 「세계자유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마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최저

등급인 7등급의 「자유없는 국가군」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다(한국은 2등급).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군부독재 및 사회주의 독재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개입이 거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권문제가 전통적으로 국가주권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와 국가주권간에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결권과 국가주권 문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 인종청소 행위나 지속적인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개인이 희생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가 특정인종집단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에 자결권 주장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현대 인권개념이 영토보호보다는 개인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국가의 영토권은 신성불가침으로 보기 어렵다.¹⁷⁾ 곧 국가주권은 결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종청소 등 대규모의 차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고 다수가 분리를 지지할 경우에 외부개입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정부가 지역자치정부와 소수민족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무시되고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1992년)는 국가들에게 소수민족의 생존보호,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사회, 경제, 공직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한 바 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는 이상형(Ideal Type)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영향·억압·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주권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주요에는 다음과 같다.¹⁸⁾

16) Ibid., p. 375.

17) Hurst Hannum, "The Specter of Secession," *Foreign Affairs*, Vol. 77, No. 2 (March/April 1998), p. 17.

- ① 최근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대로 많은 국가들이 외부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 ② 냉전시 이념전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전복선전, 무력사용 위협 등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초래하였다.
- ③ 이념적 변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압력은 정당한 국제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④ 냉전종식 후 국민의 권력 증대로 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구사회주의권에서 증대되고 있다.
- ⑤ 인권이 정부 규척에 의해서 침범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출현되고 있다.

또한 로스나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권위의 근거를 전통적인 것에서 실적(Performance)기준이 합법성의 근거가 되고 있어 국가 권위에 상당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소련과 동구의 변혁, 유고의 내전, 캐나다의 퀘벡분리 독립운동 등으로 실적에 기초한 권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보호는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가능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완전한 국가주권은 경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²⁰⁾ 국가주권은 많은 방법으로 타협되고 국제규범, 국제헌장, 국제

18) Stanley Hoffmann, *The Ethnic and Polit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pp. 14~15.

19) James N. Rosenau, "Security in a Turbulent World,"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pp. 195~196.

20) Josef Joffe, "Rethinking the Nation-State," *Foreign Affairs*, Vol. 78,

기구들에 의해서 계속 축소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자율도 문제점으로 현재 북한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고립된 섬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배타적인 국가주권 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스탠리 호프만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제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도덕적 지침으로 유엔헌장 준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적 행위와 같은 위협적 행동 등 “국제사회의 대의”에 해당되는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집단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침으로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지침으로 인권에 대한 심각하고 방대한 침해가 존재할 경우 평화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유엔이나 유엔이 허락하는 지역기구의 일방적인 개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²¹⁾ 이와 같은 주장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유엔은 “평화의 위협”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유엔이나 나토 등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집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예: 르완다, 앙골라, 유고 등). 제54차 유엔 총회에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기존의 ‘국가주권’에 앞서는 개념으로 ‘개인주권’을 강조했다. 그의 ‘개인주권’ 강조는 인도네시아 주권하에 있는 동티모르에 대한 다국적군 개입, 유고연방하에 있는 코소보에 대한 나토군 개입뿐만 아니라 94년 르완다 후투족의 투치족 대량 학살 당시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No. 6 (November/December 1999), p. 123.

21) Stanley Hoffmann, 앞의 글, 1996, p. 14.

또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이 오늘날의 국가내 갈등과 민족 분규를 대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국경을 넘어서(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유엔의 역할 강조를 시사하였다.²²⁾ 유엔은 인도적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인권 남용, 인종청소 등으로 대규모 난민을 유발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들을 설득하여 유엔산하 인권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또한, 유엔은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여 평화유지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자율권과 자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종폭력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억지력을 파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인도적 문제는 예방외교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사전 또는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개입을 위하여 미국과 지역국가들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예: 코소보, 동티모르). 이와 관련, 지역안보체제도 지역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22) 「조선일보」, 1999.9.22.

3. 안보와 인권

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인권

과거 냉전시대 국제정치의 주요 경계선은 지정학적인 경계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동·서 분단과 대립은 전략상 동맹을 조직하여 주요국가들은 블록을 구성하여 안보를 보장하려 하였다. 냉전종식후 분단과 관련된 전략적 동맹은 그 중요성이 많이 상실되었는 바, 국제분쟁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인 가정이 냉전종식후에도 신뢰성이 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고 및 구동구 공산권에서는 인종, 민족분규로 내전이 발생되었고,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등에서 종족간·종교간의 무력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개념에 입각한 안보 분석가들은 여전히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 영토적 분열은 강대국간의 군사경쟁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흥강대국들의 출현과 군사력 증강(일·독·중) 등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주장하는 자들은 미래에도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냉전종식후 세계의 주요 분열은 과거의 경제·이념적 적대감에서 문화와 문화적 동질성과 관련된 적대감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물론 문명권 사이의 경계선은 주권국 사이에서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느슨한 경계가 앞으로 주요분쟁 발생지가 되어 문명권의 충돌이 국제정치를 지배하게

23)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아직도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국제법을 위협하고 모든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경계선은 문명권 사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사회와 비타협적인 불량배 국가들로서 국제사회에 반항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라 보고 있다(예 이라크, 북한, 발칸지역등).²⁴⁾

물론 '불량배' 국가들에 대한 선정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러한 불량배 국가들을 봉쇄하고 공격적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브레진스키는 미국의 역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인 초강대국으로 향후 세계질서를 주도국들과 협력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전략의 기본틀로 상정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국제관계 모델은 분쟁의 성격을 전통적인 가정에 두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유고, 르완다, 소말리아, 스리랑카등)은 이상과 같은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적인 폭력은 테러, 인종적·종교적 갈등, 조직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등 지리적·문명적 동질성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²⁶⁾

24) Madeleine Albright, "The Tes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7, No. 6 (November/December 1998), pp. 51~53.

25)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 (New York: BasicBooks, 1977), pp. 24~29.

26) Michael T. Klare, "Redefining Security: The New Global Schisms," *Current History*, Vol. 95, No. 604 (November 1996), pp. 355~358.

첫째, 국가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나 민족내부에서 종교, 인종간의 신분차별로 발생하는 집단내부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폭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이 기존의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집단간의 적대감이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둘째,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화는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연간 세계총 소득은 1970년 10조 1천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약 20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부의 증가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국과 빈국의 국민소득차이의 심화는 국가내의 빈부격차처럼 더욱 벌어지고 있다. 빈국의 빈곤층은 빈곤을 벗어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부유층과 부유국에 대한 적대감을 악화시키고 있다. 제3세계에서 극단적인 정치운동, 마약거래와 도시범죄와 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다민족 사회에서 집단간의 소득차이의 증대는 민족집단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주요 민족·종교분쟁의 요인은 경제적·정치적·환경적·스트레스로 발생된다. 민족집단의 빈곤은 집단에서 의존을 증대시키고 집단간의 폭력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르완다의 경우 환경악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감소는 인종간의 폭력적 갈등으로 발전되었다. 유사한 사례가 중국과 페루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셋째,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식량생산과 환경유지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인구증가의 지역편차는 빈부의 격차 등과 연계되어 기존의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구는 저개발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저개발국의 인구비율은 1980년 74%에서 2000년에는 80%로 증가될 것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업이 증가하고 이것은 국제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빈국에서 부유국으로 인구가동이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범죄 및 집단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유국으로의 이민은 원래 거주민의 적대감 내지 폭력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의 인구증가는 삼림 및 수산자원 등 자연자원의 과도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환경파괴는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자원전쟁”의 시대는 이미 중동석유공급을 둘러싸고 재연되었고, 앞으로 수자원을 놓고 중동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매스컴과 기타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고 더많은 개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종교·계급·언어의 차이에 따라 대중동원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안보는 전통적인 접근과 함께 새로운 균열이 경제적·인간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좀더 인간적인 국제안보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⁷⁾

나. 인권과 안보의 상호관계

냉전시 인권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되어 왔다. 국가안보는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방위의 초점이 되었다. 냉전시 미국에서도 매카시즘의 여파로 반공, 국가안보의 목적아래 인간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하였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주주의국가들도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하였다. 한편 소련과 그 동맹국 및 제3세계국가들은 인권과 국가안보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냉전종식후, 국제사회는 인권과 안보와의 관계를 재조명하

27) Ibid., p. 358.

기 시작하였다. 만일 안보가 인간보호라는 데서 출발한다면 안보와 인권과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존엄과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생명권, 사회보장권, 도덕적 자율성의 보장이 인권보호의 주요과제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구성된다면 국가안보는 개인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생명, 자유, 자결 등 기본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헬싱키 협정(1975)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동서간의 공식적인 합의인 것이다. 이 협정의 1부 7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한다는데 합의하고 3부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정치, 경제 및 문화와 같은 중요성을 인정하였다.²⁸⁾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권을 희생하는 안보는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정부가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쟁상태에 있으면 결코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국가는 시민의 개인권리 침식으로 국가의 진정한 힘과 안보를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각 개인의 인권이 향유되는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안보와 개인안보간에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냉전시민주주의 국가들도 외부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권문제가 대외정책에서 무시되고 동맹국들의 인권남용도 묵인한 사례가 많다. 냉전종식후 세계각국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평화건설과 예방외교 등 인권과 안보가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인권과 개인안보에 유일하고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우선 국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자의

28) John Fry, *The Helsinki Proces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pp. 175~176.

적인 체포와 구금 등).²⁹⁾

또한 현대자본주의 시장 기구도 개인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문제, 사회보장문제, 취업 문제 등을 인권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사회·경제적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 왔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서 초래되는 시민에 대한 위협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사회보장, 실업보험, 환경보호, 노약자 및 신체장애가 보호등). 아직도 시장의 자유화라는 국제적 정책과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간의 불일치로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인권은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안보가 국제적 안보차원에서 이해되고 있고, 개인의 인권이 어느 곳에서 체계적으로 침해될 경우 모든 사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인권의 향유를 보장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대량 인종살상 등 '인종청소'는 더이상 국가주권의 특권이 아니다. 코소보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과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군 파견 등은 인종살상에 대한 국제적 관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인권문제와 국가안보를 동일시하는 국가는 없지만 양자간의 갈등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하겠다.

29) Jack Donnelly, "Rethinking Human Rights," *Current History*, Vol. 95, No. 604 (November 1996), p. 389.

다.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최근 인종갈등은 냉전을 대체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경제적 갈등과 연계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증오는 국제안보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가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인종전쟁은 주권, 자결, 영토보호라는 국제적 규범과 내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주권이나 자결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국가의 주권 보호에는 두가지 역사적·도덕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보호와, 둘째는 개인과 집단이 정부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제규범이 국내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의 통치 및 개인 자유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가주권이나 자결권 주장에 대한 대응에 인권보호가 최우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영토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를 신성불가침으로 볼 수는 없다. 국제적 규범도 폭력에 의한 주장을 조장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정치적·도덕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구성원이 인권을 중요시할 경우 현재의 분쟁은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다.

전통적으로 안보는 좁은 의미의 영토안보, 국가이익 보호, 핵위협으로부터의 안보를 말해왔다. 이제 안보 개념의 초점은 인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는 어린이가 전염병에 죽지 않고, 직업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인종간장이 폭력으로 폭발되지 않고, 반정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안보는 무기에 관심없고 인간 생활과 존엄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³⁰⁾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의 기본성격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다.³¹⁾

첫째, 인간안보는 보편적인 관심사로 빈국과 부국의 구별없이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인권침해, 마약, 오염, 범죄 등이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둘째, 인간안보는 국제적 관심사이다. 인간안보의 위협이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나더라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인간안보에서 초기 예방이 사후 개입보다 용이하다. 질병과 인종분규 등은 예방이 중요하다.

넷째, 인간안보는 인간위주이다. 인간의 생활방법은 사회와 호흡하는 것으로 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시장과 사회기회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간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과거에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냉전종식후 세계적 차원에서 핵위협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세계적인 빈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세계적인 빈곤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안보개념은 변화하여야 한다. 우선, 영토적 안보의 배타적 주장보다는 인간안보를 강조해야 한다. 군비증강에 의한 안보에서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안보의 주요 범주는 ① 경제안보, ② 식량안보, ③ 건강안보, ④ 환경안보, ⑤ 개발안보, ⑥ 공동체 안보, ⑦ 정치적 안보이다.³²⁾

30)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Redefining Security: The Human Dimension,"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p. 229.

31) *Ibid.*, p. 229.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1993년 AI(국제 사면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0개 국가에 정치적 억압, 체계적 고문, 학대, 행방불명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폭발, 경제적 빈부격차 증대, 이민압력, 환경악화, 마약거래 및 국제 테러는 인간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인간안보가 21세기의 주요도전이라는 전제하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인간안보를 위해 빈·부국들간에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국가들간의 완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엔은 예방외교에 주력한다. 넷째, 인간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유엔등 국제적 기구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2) Ibid., p. 231. 또한 신체적 안보와 생존권 및 자유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대해서는 Henry Shue, *Basic Righ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Ⅲ.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1. 국제정치와 북한인권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제정치의 주요의제로 간주하고 국가주권보다 개인주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도 강대국들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이 인도적 개입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인권문제로 유엔의 허락없이 인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경우, 즉 '코소보' 사태 등은 예외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도 주장하고 있듯이 국가주권 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이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생각은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떼뻗하지 못한 이유도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도 '코소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으나 강력하고 독자적인 평화유지 능력이 결여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지역강대국들의 인도적 개입이 '코소보'의 '인종청소'를 중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해당국가의 인권문제가 지역 강대국들의 지역안보나 경제이익이 걸려 있고, 해당국가가 군사적으로 취약할 경우에 인도적 개입이 실행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냉전시 냉전논리에 따라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국제기구 및 민간인권 단체의 보고에서도 여러차례 밝혀진 바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98~99년 보고

서에서 북한을 “자유 없는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미국무부 「각국인권보고서」와 인권전문가 등은 북한은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변 관련국들은 북한 인권문제보다는 지역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당분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나 동북아 정세와 관련,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전면적인 대북 인권개선 압력을 자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폐쇄정책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많은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나 과거 동맹국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어 국제적 여론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에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고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재중 탈북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넷째, 남한도 남북문제를 고려하여 인도적 사안 외에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문제는 남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 강대국들이 대북 인권압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인권문제에 대한 역할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유엔, 유럽연합

33)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8,” (February 26, 1999), http://www.state.gov/www/global/human_rights/1998_hrp_report, p. 1.

국가들 및 국내의 NGO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및 국제협력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국제여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북한당국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국제사회의 반응과 북한의 대응

북한의 인권문제는 1983년 AI의 연례보고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이후 국제인권단체의 관심을 끌었다. 1988년 아시아 워치(Asia Watch: 현재는 Human Rights Watch/Asia)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이라는 최초의 체계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였다.³⁴⁾ AI는 1989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출판함으로써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평가를 전개하였다. AI는 1994년 7월 30일 승리마을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49명의 정치범들의 명단과 인권실태를 폭로하였다. 나아가 AI는 1995년 4월에 개최된 ‘평양축전’ 기간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AI는 1996년 특별보고서에서 탈북자 즉결 처형 및 송환후 처형에 대한 실태를 보도하였고, 1997년 1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출판하였다.³⁵⁾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APPU)은 199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총회에서 남한 대표단이 제출한 “북한내 인권개선과 역

34) 아시아감시위원회,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35)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9」, p. 68.

류된 한국인의 조속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해리티지 재단」은 1992년 7월 「북한의 인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국제언론인 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1995년 5월 북한의 언론의 자유와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 등을 대북결의안으로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였다.

미 국무부는 매년 초 「각국 인권실태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9년 2월 「'98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당국은 개인권리 등 국제인권규범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당의 목적을 전복시키려는 외국의 사회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내에 12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15~20만의 정치범중 일부분은 가족과 함께 극심한 생활환경속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³⁶⁾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1994년)에서는 EU대표 등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이 국제적 인권실상 조사활동을 위한 문호개방과 세계인권 법규준수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제51차 인권위원회(1995년)에서는 공로명 외무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북한당국의 인권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인권위원회(1999.3)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도 국제적 여론조성에 이바지하였다.

1997년 8월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소위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인권소위는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

36) U.S. Department of State, 앞의 보고서, p. 6.

보장, 인권이사회 정기보고서 제출 등 4개항의 대북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국제정치的主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인권은 심각한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여 대외인권 외교창구로 활용하여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국제화시키면서 자신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자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1997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가 대북인권 개선결의안을 가결한데 대해 주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B규약(ICCPR)의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1997.8)하였으나 유엔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제61차 인권이사회(1997.10~11)는 북한의 인권규약탈퇴는 인권규약 및 국제법에 의거, 허용될 수 없다고 북한에 통지하였다. 북한은 여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나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협약에 1957년 가입하였고, 1970년 발효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에 1984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네스코 및 아동권리 협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인권기구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입은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시키려는 ‘화평연변’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인권기구나 서방의 미디어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으며,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AI 보고서가 발표되자 ‘고상문’과 ‘유성근’ 등 납북자 7명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1994.8)하여 ‘자진입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대북인권 개선 결의안 가결후 1년뒤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재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형식적이거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1999.12.1)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 회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였다.³⁷⁾ 북한은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여론 확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다루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인권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유엔이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3. 북한인권문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

37) 「조선일보」, 1999.12.3.

류하여 인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권개념의 발전에서 기술했듯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논리는 정치 및 사회 활동의 자유와 평등한 법 집행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권과 개도국은 경제적인 평등분배, 사회보장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구조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이분법은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였으나 냉전종식으로 좌·우 편견이 극복되고 있고 인권의 범주는 양 부문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규약에 따라 위의 두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중에 남한과 관계가 있는 몇가지 쟁점이 있다.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들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 인적 접촉 등은 인도적 문제로서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독일 통일전에 동서독간에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은 인적 접촉·교류로 간주되었고, 중·대만 간에도 인적 접촉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 남북한의 인도적 사안은 남북한간에 또는 국제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문제이다.

러시아의 인권운동가인 알렉산드르 포드라비네크 “엑스프레스 호조니가”지 발행인 겸 편집국장은 “북한처럼 인권이 완벽히 박탈되어 있는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 본질에서 파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⁸⁾

따라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8) 「조선일보」, 1999.11.28.

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1)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수정·보완하였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체제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사회주의체제이다. 북한은 유교적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은 1당지배의 전체주의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통치행위와 권위의 근거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기존헌법에 없었던 「헌법서문」을 신설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칭송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여 주석직을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 공화국’, 즉 북한이 ‘김씨 왕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주창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헌법 제3조).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층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다...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정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옹기 운영하여 나갈수 있습니다.³⁹⁾

위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귀착되고 있고, 북한정치체제의 핵심은 수령의 독재에 있다. 수령의 영도와 당의 조직적 기반 없이는 인민대중은 무력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더 확대하여 공산화혁명과정을 수령의 지도와 완전 일치시키는 데까지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곧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수령의 요구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교양 개조하여 수령에게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만들며...수령의 교시 가르침을 충직하게 실현하는 당에 의해 지도될 때만 노동계급은 자주적 혁명계급이 된다.⁴⁰⁾

결국 개인을 개조하여 수령의 뜻에 맞추는 것이 곧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정식 교수는 “만약 김일성 주석의 말이 조선노동당의 정신(soul)이라면 당조직은 그의 몸이요, 이 몸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중앙의 모든 변덕과 지시에 복종할 것이 강요되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⁴¹⁾

39)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1982.3.31, p. 131.

40) “김일성 혁명사상,” 『철학사전』, p. 115.

41) Chong sik Le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 133.

이와 같이 김일성의 권위는 과거 유교사회에서와 같이 우월한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옷을 입힌 주체사상으로 새로운 도덕적 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자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²⁾ 북한은 과거 유교주의 전통을 충분히 활용하여 김일성·김정일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대한 공경을 위해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이익추구를 배제해 왔다. 또한 유교적 전통인 ‘충효’를 상하관계의 근본으로 강조하고 활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북한지배는 전통적 집단가치와 태도가 심분 활용되고 있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강조되고 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비서(이하 황장엽)는 김일성은 과거 봉건시대의 왕의 지위를 누렸고, 김일성 일가의 신분적 특권면에서 보아도 유교적 봉건사회와 유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황장엽은 북한에서의 사람평가는 첫째는 김일성·김정일에 절대적으로 충실한가, 둘째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은 김정일을 포함한 그의 ‘혁명적 가계’를 절대 숭배하는 신격화작업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우상화 과정에서 1974년 ‘10계명’으로 불리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이 마련되었고, 이후 ‘10대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사회규범이 되었다.

42) Lucian W. Pye와 Richard H. Solomon 등은 모택동 치하의 중국을 유교적 레니니즘으로 평가하고 통치목적으로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ucian W. Pye,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 참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상교육이나 통치스타일에서 최근 유교전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인민의 태양’, ‘경애하는 수령’, ‘인류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등 미사여구로 찬양·송배되었고, 김일성 사후 북한인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칭하고 1997년부터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키로 하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98년 개정된 수정헌법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여 국방산업 전반을 지도”하고 있다(헌법 제102조). 즉 국방위원장은 국가최고 직책으로 그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는 바,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일에 대한 추대사를 통해서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이라고 천명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부자세습체제를 완전한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왕국으로 변질되었다. 김정일의 세습준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주체사상과 수령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서 실질적인 후계자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귀순자들의 대부분은 북한체제를 봉건군주제와 군부에 의탁해 통치하는 군국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⁴³⁾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북한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헌법 제1조). 경제원칙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헌법 제19조)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헌법 제20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헌법 제21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43) 귀순자 한태철(1999.5.18), 석영환(1999.5.20), 심신복(1999.5.25), 김영립(1999.5.18) 등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리고 인민경제는 계획경제(헌법 제34조)라고 규정하여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중앙집권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계급국가이다. 북한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완성을 주창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계급은 독재의 대상이 되고, 인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권은 인민만이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4조). 이에 따라 북한은 58년부터 8차례에 걸친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여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차별하고 있다. 석영환 등 많은 귀순자들은 계급과 성분차별의 대표적인 예는 대학교육과 간부등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⁴⁾

북한은 노동당 1당지배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위에 군림하고 있어 1당 지배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였고,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 구성하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조직(조선로동당규약, 1980.10.1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의해서 지도되고 당이 1인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당원과 인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이고 확고한 신앙(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완전한 권력집중과 사회의 완전한 통제 및 주체사상에 규정된 완전

44) 귀순자 석영환(1999.5.20), 한태철(1999.5.18) 등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한 사회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계속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한 대중동원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개인보다 국가 집단을 앞세우고 전체인민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은 사회를 동지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라고 선언하고(헌법 제10조),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헌법 제81조). 구헌법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생활의 기초이다”라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나 집단주의 원칙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헌법 제63조). 이와 같이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강력한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영도체제가 첨가된 현대화된 전체주의국가이다. 또한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81조)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헌법 제67조)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미디어 활동을 정부 통제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정보는 정부허가를 받는 것만 유입이 허용되고 있다.⁴⁵⁾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사상이 만연되어 있고, 김일성이 조직하고 김정일이 승계한 조선노동당의 절대 독재치하에 놓여 있다. 북한의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⁴⁶⁾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45) U.S. Department of State, 앞의 보고서, p. 2.

46)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인권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규범의 인권,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불법적이고 미국적인 사회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장이 국가나 노동당의 목표에 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⁴⁷⁾ 또한 주민들은 인권개념을 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⁴⁸⁾ 이와 같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북한의 인권의 개념 및 정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철저히 의존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10대원칙'을 만들었다. '10대원칙'은 주민의 사상은 물론 주민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부분적인 인권보장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개념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수령의 시혜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문제를 인덕정치와 광폭정치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1994.11.1)에 발표된 김정일 명의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문건에서부터 인덕정치가 본격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들어서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연일 인덕정치의 개념을 해설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평양방송』의 "김정일혁명력사강좌 163회"(1995.1.16)에서 인덕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7) U.S. Department of State, 앞의 보고서, p. 1.

48) 귀순자 석영환, 김영립 등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인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핌, 혜택을 베푸는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품성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주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이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는 광폭정치입니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1995.6.24)에서 인덕정치와 인권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정치는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믿음의 힘으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참된 삶을 누리게 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정치이다.

북한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란 과거 군주들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강조하여 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민들을 끌어안아 일종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선전차원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⁹⁾ 인권이 지도자의 시

49) 귀순자 한태철, 김영립 등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해로 간주되고 있고 성분분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회색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헌법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라는 규정은 사회주의 혁명세력과 혁명에 동조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의식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1995.6.24)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글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썩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계급적 원썩' 또는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철저히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박탈되고 인권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헌법 제63조),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북한헌법에서 이를 알 수 있다(헌법 제81조).

199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대표는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집단의 인권을 떠난 개인의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개인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며, 개인이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생활원칙은 반드시 사람들간의 반목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그 어느 사회보다 첨예화시킨다는 것이다.⁵⁰⁾

다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인권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인민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고 강조한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의 구성원은 소속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표인 수령(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모든 법의 기본권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50)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제2호, 1990, p. 93.

즉 사회주의권 일반이 보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의 신체적 보호나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행복추구’ 등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제3세계가 주장하는 ‘개발권’(the right to development)과 인권의 상대주의(relativism)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지 못하면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개발권 논리에 편승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서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 제도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한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을 자본주의식 인권보다 우월하고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북한주민들은 무상치료, 무상교육을 사회주의의 강점이라고 여겨 왔으나 경제난에 따라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점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⁵¹⁾

일곱째,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사법제도는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인권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사법기관의 기능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유일적인 정확한 실현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기관에 의한 공정한 인권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조문들로 구성된 북한형법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기대하기 어렵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부인되고 있다.

51) 귀순자 한태철과 심신복의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나. 북한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는 <표-1>에서와 같이 생명권·고문금지, 이동 및 거주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1981년 9월 ICCPR에 비준·가입하였다.

북한인권과 관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생명권(공개처형), 신체의 자유(정치범수용소), 평등권(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의 실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생명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마땅히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규정된 인권내용

- 제6조: 생명권
- 제7조: 고문금지
- 제8조: 강제노동금지
- 제9조: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제10조: 구금시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
- 제11조: 채무로 인한 구금으로부터 자유
- 제12조: 이동 및 거주선택의 자유
- 제13조: 외국인의 강제추방 금지
-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15조: 형사법 소급 금지
- 제16조: 법앞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 제20조: 전쟁고무 및 민족·인종·종교적 증오심 고무 금지
- 제21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
- 제22조: 결사의 자유
- 제23조: 결혼과 가족구성의 권리
- 제24조: 아동의 권리
- 제25조: 정치적 권리
- 제26조: 법앞에서의 평등
- 제27조: 소수민족의 권리

<출처> A.H.Robertson and J.G.Merrills, Human Rights in the World, pp. 36~37.

북한은 1987년 제정한 형법에서 공화국 전복음모 및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 박탈형 등의 형벌 규정이 있

다. 북한은 최소한 세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정치적 투쟁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 사건」 이후와 1967년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사평론」 편집장인 뻬에르 리글로는 「공산주의 흑막」(1977.1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노동당의 숙청으로 10만이 숨졌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 여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형법 조항들은 애매 모호한 용어의 사용과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형법은 정치범과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생명권을 널리 위협하고 있다.

<공개처형>

북한에서 사형은 계급적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사형의 대표적인 실시방법은 공개처형이 채택되고 있다. 공개처형의 대상은 정치범과 흉악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도 포함 되어 있고, 처형시기는 지도자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

1993년 10월 AI는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고,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AI는 1997년 1월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처형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또는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 행위의 증가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귀순자 정갑연·장해성(1996.5입국)과 홍경화(1997.5입국)는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 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되어 범죄자(경제범포함)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전국적 규모로 실시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⁵²⁾

특히 귀순자 김경일(1998.6입국)은 사회안전성에서 범죄자를 색출하여 군마다 30명 이상씩 처형하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왔는데, 은덕군에서는 주로 동경다리에서 많은 때는 4~5명씩 처형하였다고 한다. 선봉에서도 96년 겨울에 1명이 처형되었다. 공개처형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인민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의 처형 판정에 따라 즉각 시행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⁵³⁾

북한은 또한 심각한 체제위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간부들도 처형하고 있다. 황장엽은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음란영화를 제작한 죄로 공개 처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⁵⁴⁾

또한 일본 「교토통신」(1997.11.6)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위원 이봉원 대장, 북한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 및 다수의 간부가 반역과 간첩사건, 부패혐의로 공개 또한 비밀 처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회소 내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범위

52) 귀순자 주영희, 김원형, 장성숙과 장선영 등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4)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32.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귀순자 안명철과 최동철은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약식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위부원에 위한 자의적인 공개 또는 비밀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⁵⁾

교도소내에서의 공개처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귀순자 이순옥(1995.12입국)은 본인이 수감되었던 개천 교화소에서 9번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 행위인 것이다.

신체의 자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 즉 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유엔은 세계인권 선언과 고문방지 협약(1984)에서 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제79조)하고 있다. 또한, 1992년 1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인권보장(제4조), 증거재판주의(제35조, 제36조) 등을 강조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상례가 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 처분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⁵⁶⁾

55) 위의 책, p. 32.

<정치범수용소>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이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입국한 귀순자 김용준(1982. 1 입국)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혁(1992. 8. 입국),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1994. 10 입국)과 최동철(1995. 12 입국) 등에 의해서 추가로 제공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종파굴’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를 ‘00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다. 체제유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 문서번호나 지역고유 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이와 같은 정치범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종파사건’(최창식·윤공흠 등의 반김일성음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이 1958년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1959년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탄관 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오가와하루히사 일본 도쿄대 교수는 지금의 정치범 수용소는 60년 후반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

56) 위의 책, p. 35.

체계·확립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정치범수용소는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을 정치사상범으로 표현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범들이나 반대하는 일부주민들은 특별통제대상 구역인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1월 22일 함북회령(5만), 함북청진(5만), 함북화성(2만), 함남단천(1만), 함남덕성(1만), 함남요덕(5만), 자강동신(1,7만), 평북천마(1,5만), 평남북천(5천) 등에 10개의 수용소를 설치하여 체제위해분자 20만 7천여명을 재판 절차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권억압은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한다. 최근에는 김정일 비판자, 경제문제 불평자 등도 수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자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

평등권

평등권은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과 기회균등이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서 인

57) 「조선일보」, 1999.12.2.

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권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해 차별되어서도 안되고, 기회균등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제65조)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부터 1983년까지 8차례의 성분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67~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은 현재까지도 성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성분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폐지 또한 추가되는 부류가 많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 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직업·결혼 등의 중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⁸⁾

핵심군중은 북한의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28%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 진학·승진·배급·거주·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58)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2~40.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처,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와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나 일부는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복잡군중은 전체인구의 27%로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로 구성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거주지·의료 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한편 연좌제에 의한 통제 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산가족들은 '월남파'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및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유권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추구에 기본요소이기도 한다.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 선언에는 자유로운 해외이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75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귀순자 김영림, 한태철, 박정철 등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대외선전용으로 형식에 불과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⁵⁹⁾ 이와 같이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체제부정적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제49차 회기에서 북한이 거주이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1998년 8월 제50차 회의에서도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인권신장에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다. 세계인권선언(제19)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제19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와 모든 정보와 사상에 대해 접근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제67조 1문)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곧 체제전복으

5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9.5.18, 10.19, 10.20.

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⁶⁰⁾

북한의 언론·출판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부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공영방송에 고정되어 있는 바, 사회안전성은 정규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다. 물론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 방문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판물 역시 노동당이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토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

북한에서는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제67조),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귀순자 운동은 유학생들의 반체제 활동이 있었으나 모두 체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⁶¹⁾

<사상·종교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식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60) U.S. Department of State, 앞의 보고서, p. 2.

61)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9」, p. 66.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B조약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주장에 따라 종교탄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종교인들은 성분불량자로 간주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8년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였다. 1989년부터 불교활동도 허용되었다.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규정(제68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교활동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인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단체를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으로 외부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⁶²⁾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와 개도국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인권문제에 있어서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을 인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인권보호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62) 「조선일보」, 1999.1.1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생존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은 <표-2>와 같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 북한인권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생존권과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명시된 인권내용

- | |
|---------------------------|
| 제6조: 노동권 |
| 제7조: 노동조건 보장 및 공정한 임금 지불 |
| 제8조: 파업 및 노조를 결성할 권리 |
| 제9조: 사회보장권 |
| 제10조: 부양가족보호권 |
| 제11조: 의식주 보장 |
| 제12조: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권 |
| 제13조: 교육을 받을 권리 |
| 제15조: 문화생활 및 과학활동에 참여할 권리 |

<출처> A.H.Robertson and J.G. Mills, Human Rights in the World, p. 277.

생존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는 식량배급이 체제유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충성과 동원을 유발시키는 한편 주민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국가가 식량 배급을 책임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 침체와 식량난 악화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지 배급표의 기준량이 무시되고 세대마다 월 3~5 일분의 식량이 배급되었고,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었다. 1996년 말부터는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공식배급체제는 특수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정간부, 군인 등 특수계층의 생계보장에 그치고 있다. 일반도시 가정의 경우 전체 식량소비량의 70% 정도를 '장마당' 등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식량거래를 중지할 경우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황장엽은 1995년 50만이 굶어죽었으며, 1966년 11월 아사자 수가 1백만명에 이른다고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가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⁶³⁾ 북한의 아사자 수는 정확히 추계되고 있지 않으나, 귀순자 김동수(1998. 2. 입국)는 2백~3백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94년 이후 350만명, 국군포로 장무환은 97년 아사자를 100만,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 특별조사반은 96~97년간 아사자는 100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아사자가 엄청난 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은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를 잃고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북한에서는 꽃계비라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이혼률이 상승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구조적인 문제로 1992년 이래로 200만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더욱이 1995~96년에 걸친 두차례의 홍수와 1997년 가뭄은 북한의

63)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p. 14.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7년도에 349만 톤, 해외공급량은 121.2만 톤(수입32.3만 톤, 원조88.9만 톤)으로 총 공급량은 470.2만 톤으로 통일부는 추정하였다. 그러나 식량사정은 정상 배급시 650만 톤, 22% 감량공급 경우 551만 톤으로 평가할 때 80~180만 톤 가량 부족하다(22% 감량배급경우 성인 1일 546g 배급). 1998년과 1999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1997년도와 비슷하다. 1999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22% 감량 배급시 163만 톤이 부족하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저권장량(성인 1일 450g)을 기준으로 해도 145만 톤이 부족하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발표했다.⁶⁴⁾ FAO와 WFP는 북한은 1999~2000년에도 1998~1999년과 마찬가지로 규모인 129만 톤의 추가 식량 원조가 필요하고, 수입 30만 톤과 외국원조 37만 톤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62만 톤 이상의 추가 식량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나아가서 아제이 마켄데이 FAO경제자문위원은 영향 실종에 걸린 농업인력이 노동 집약적인 북한의 농업체제를 지탱할 만한 노동력이 되지 못해 기근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⁶⁵⁾

사회보장권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조선중앙방송』, 1997.12.5).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64)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9』, p. 92.

65) 『조선일보』, 1999.11.11.

무상치료제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의료체제는 성분에 따른 차등 적용이 지속되고, 병원들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수준은 극히 열악한 실태에 놓여 있다. 소아과 의사였던 귀순자 이영심(1998.6 입국)은 의료기구가 없어 병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⁶⁶⁾ 또한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고 간호사 출신 귀순자 김순희(1997.5입국)는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체제의 마비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속출하게 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수인성 전염병과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고, 결핵환자는 300~400만에 이른다고 한다.⁶⁷⁾

(3) 재북이산가족 실태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거주 친척들은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북한 전체 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이다. 이들은 조상들의 한국전쟁때 있었던 과오로 인하여 아직도 후손들이 고용·교육·거주·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국군포로였던 양순용에 의하면,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6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9.

67) 귀순자 최훈철의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11.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⁶⁸⁾

다. 인도적 문제

(1)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경제난과 식량난 악화로 식량을 구하려는 주민들의 자유이동이 증대됨으로써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러시아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현재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약 2,000~3,000명 수준이고, 재외공관에 직·간접으로 국내입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이 10만~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탈북자들은 국내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97년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식량을 구하면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제3국에 체류하더라도 언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남한으로 오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⁶⁹⁾

북한은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서 특별 관리하였으나,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탈북

68) 『북한인권백서 1999』, p. 53. 미국무부의 『'99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귀순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이산가족들의 대우가 최근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9) 『조선일보』, 1999.12.2.

후 체류기간과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대에 체결한 「중국·북한 밀입국자 송환협정」,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한편,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은 200~3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러시아 정부는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1997)을 통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러시아내 탈북주민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

(2) 남북한 인도주의 문제

남북 분단과 전쟁을 통해 남북한에는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월남자 가족들을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복잡군중’에 속하고 있다. 북한의 월남자 가족들은 농촌지역으로 강제이주되거나 사회생활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남북한은 1957년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1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1971년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어 모두 130여회의 쌍방적십자간의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에 북한의 35가구, 남한의 30가구만이 실현되었다.

이산가족 고향방문에 대한 남북간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정치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아직도 공식적인 이산가족교류는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교류를 외부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56명이고, 이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남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 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남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⁷⁰⁾

또한 한국전을 거치면서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1만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중 생존자들은 억류중이거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차별을 받고 있고, 이들 가족들은 탄광의 광부 등 직업도 세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9」, p. 128.

IV. 대북인권 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제고된 것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국내외적인 대북지원이 그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실태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엔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국제지원 식량배분에서도 그 사용처에 관해 적절한 감시를 못하였고, 식량을 받고 있는 북한단체중 90%를 방문하지 못하였다고 미 회계감사원(GAO: U.S. Government Audit Office)이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적 지원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였고 국제인권규약에도 부분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회원국의 의무와 인권규약을 준수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냉전종식후 개인의 인권보장이 국가주권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되던 전통적인 인식은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정치는 개인의 안보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권문제도 국제적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스탠리 호프만은 인간은 전통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공통적인 인성을 보존·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현재의 남·북 관계나 관련국들의 입장에서

71) Stanley Hoffman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Human Rights," *Dissent* (Spring 1997), p. 9.

전면적인 인권개선 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는 계속 묵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방법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네가지 기본방향과 국내 및 국제적 접근 등 세부추진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치적 리더쉽 요망

최근 유고와 동티모르의 '인종청소'는 미국과 지역국들의 국제적 개입으로 중단되었다. 냉전시 헬싱키 협정도 동·서간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도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의 경험으로 주요 인권침해사태가 인도적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은 예외가 되고 있다. 헬싱키 협정도 동·서간의 균축과 인권이 연계되어 해결되었고, 동서독과 중국은 전향적인 정치적 자세로, 대만은 우월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교류문제에 있어 남한의 정치적 리더쉽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인권과 이산가족교류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나.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모색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사안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데 있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체제와 관련된 정치성을 띤 문제라면, 인도주의 문제는 남한과 관련되어 있는 비교적 정치성을 덜 띤 문제라고 볼 수 있다.⁷²⁾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한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서 명시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등을 합의한 바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북 직접협상을 요구하면서 유엔기구 및 지역협력채널을 통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인권관련 규정 등을 북한이 준수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개선 요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의 민주화나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례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다. 인권개선을 위한 요구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인도적 사안 우선해결 촉구와 반인륜적인 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공개처형 금지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거들을 서류화해서 축적하고 이것을 기초로 국제사회에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2) 김병로, 앞의 책, p. 78.

라. 다자적 접근

현재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남한이 직접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교류를 우선목표로 설정하였는 바, 북한인권 문제는 다자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사안과는 달리 다자적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국제적 사례에서도 인권문제로 인한 양자간의 대립은 상호간의 반목만 깊게 하고 비용만 들게 하여 인권개선에 비효율적이었다. 유엔기구와 국제 NGOs 및 지역기구 등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적 접근

가. 대통령의 리더쉽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이산가족문제에 한 목소리를 가지고 대처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부처간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각 부처를 지휘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 화해 및 협력 증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 하려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햇볕정책”으로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유엔기구와 국제NGO 및 지역기구 등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이 요망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1998.2.25), 정부는 이산가족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4월과 1999년 6월에 북경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북한과 교섭한 바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기구로서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을 설치하고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1999.5)을 제정하여 이산가족의 대북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99년에 149명, 98년에 72명, 97년에 86명).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관련 부처들이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한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바, 최근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남한으로 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³⁾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 대통령의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나.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이산가족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통일에 앞서 분단 극복을 위한 해결과제이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1992년 9월

73) 「조선일보」, 1999.12.2.

에 서명·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체제유지를 이유로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를 기피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고령이산가족 방북간소화, ② 제3국에서의 생사확인·상봉지원, ③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우편 교류 추진, ④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⑤ 남북이산가족 교류추진, ⑥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의 발족, ⑦ 이산가족 관련 법 개정을 세부실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산가족교류가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을 「월남자 가족」으로 구분하여 성분차별을 해 왔다. 따라서 이산가족교류는 재북가족들의 반체제 성향을 부추기고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체제에 이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과거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에는 이산가족이 없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면서도 경제교류, 협력에는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4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상호관심사의 하나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비료지원 문제를 병행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 후 북한은 대남 이산가족 편지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1998년7월5일 부터), 실향민에게 선별적으로 공식적인 방북초청을 해 가족들을 만난 사례도 있다.⁷⁴⁾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국내 NGO 등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한의 이산가족교류 주장을 희석시키고 북한이 인도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대

74) 「동아일보」, 1999.12.2.

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1) 이산가족교류 문제와 교류·협력 병행

북한이 이산가족 교류 문제를 체제유지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교류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북한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이산가족 교류를 성사시키는 좋은 방법이다(예: 동서독 관계).

(2) 대북지원과 인권 문제연계

대북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에게 인권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는 연계전략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인도주의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 및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지원과 납북억류자 송환, 이산가족교류, 국군포로 및 유해송환 등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연계시키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계과정에서 동서독 경우와 같이 북한의 체면을 감안하여 비밀거래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⁷⁵⁾ 또한 이산가족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국간 대화를 통한 이산가족교류의 단계적 추진으로 북한의 수용을 얻어내야 하겠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5)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 통일원, 1994), pp. 334~352.

- 제1단계 : 이산가족생사 확인과 생존하는 재북가족의 거주지 확인
및 제한된 규모의 대북 송금허용
- 제2단계 : 가족상봉과 이를 위한 면회소 설치
- 제3단계 : 고령자의 고향방문과 실향민의 고향방문 및 고향에 대한
투자 허용
- 제4단계 : 전면적인 서신, 전화연락 및 상속허용
- 제5단계 : 환갑, 임종, 장례식 등에 직계가족의 방문 허용 및 고령
자들의 재결합 허용

(3)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원 연계

최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다분히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산가족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당국간 회담에서도 대북 지원에 대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방법은 현물로,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및 제3국 상봉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속

현재 이산가족들은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및 상봉을 모색하고 있는 바,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1991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상봉의 경우 65건에 5,760만원, 생사확인의 경우 43명에 1,88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산가족이 제3국이나 국내교류 주선 단체 등을 통하여 북한가족의 생사 확인에서 상봉까지 평균 1,115만원(9,291달러)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⁶⁾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액을 이산가족의 생활형편에 따라 현실화하여 나가야 하겠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에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내 인권 NGO들의 활성화

1990년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단체가 민간차원에서 발족되고 있다. 1994년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출범하였다. 이 단체들은 북한인권실상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기여하고 있다.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일본의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한국·일본·영어로 「생명과 인권」이라는 계간지를 배포하여 국제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활동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북한도 인권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는 서울NGO세계대회를 계기로(1999.10.11)

76) 「조선일보」, 1999.11.7.

유엔 NGO 집행위원회 일레인 발도프 의장은 “유엔이 중국 탈북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NGO들이 세계적으로 NGO들과 연대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등 유엔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성과를 얻어 냈다.⁷⁷⁾

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NGO들의 활동은 국제협력을 구축하는 촉매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제공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지원 등이 지원방법이 될 수 있다.

3. 국제적 접근

가. 다자적 접근

(1) 유엔기구 활용

인권문제에 대한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유엔에 대한 인권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 조사 그리고 필요한 제안 등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기구들의 활동대상은 불법구금, 행방불명, 고문 및 반인륜적 처우, 법적 절차 없는 자의적인 처형 및 종교적 관용 사안 등이다.

탈북한 귀순자들을 통하여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77) 「조선일보」, 1999.10.14.

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북한인권실태 조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지 결코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2) 국제인권단체 활용

다자적 접근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접근, 생사확인 및 서신 교환 등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은 공·사적인 통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형식은 대북지원금 전달 시에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NGO들을 통해서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자유권 확대 등 국제 규약이 정하는 인권침해를 금지하도록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NGO들의 도움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인권연맹(ILHR), 아시아 워치, 국제인권협회(ISHF) 등 국가별, 지역별 조직을 갖춘 대표적인 NGO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국 및 지역인권체제 활용

최근 코소보 및 티모르사태에서 지역관련국들의 인도적 개입이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련국들과의 협력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일·EU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북 경제 식량지원 및 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인권 외교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지역인권체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 아태인권 워크숍」을 활용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인권체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의 지역기구들이 향후 아시아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 미디어의 적극 활용

국제미디어의 활용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등장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는 미국 CNN 방송이 지역인권문제를 세계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에 촉매제가 되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제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하겠다.

V. 결 론

인간은 인권획득을 위하여 투쟁해 왔다. 인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정치적·사회적 권리와 자율)을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첫째, 개인은 중세기의 봉건 왕조와 종교의 자위적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은 인간이 피동적인 지배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신장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사회주의 붕괴는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 왔다. 전통적으로 서방측이 중시해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주의권이 선호해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분리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좌·우 이념의 편견이 극복됨으로써 인권의 범주는 확대·발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최근 과학의 발달, 특히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에 대한 사회적 조작의 유혹과 능력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과학의 불평등한 이용이라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고,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냉전종식후 민족집단과 소수민족의 자결권 주장이 대두되고, 이에 따른 무력갈등은 국제사회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발전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여 인권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이를 기초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제 NGO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기구들의 집행능력이 제약되어 있고 인권관련 국제 NGO들의 활동도 구속력이 없어 이들의 활동은 다분히 결의, 항의 및 선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주권에 속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인도적 개입에 장애요인이 되어 있다.

냉전종식후 코소보와 동티모르의 '인종청소'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인권문제를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공동의 과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평화의 위협'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주권과 소수민족의 자결권의 타협이 필요하고 인권유린이 특정집단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에 자결권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권문제가 배타적인 국가주권 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개인의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우선한다는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성명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지역국가들도 지역내 반인륜적 국가행위에 대해서 인도적 개입을 취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개념도 국가방위에서 개인보호로 초점이 이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냉전시와는 달리 안보와 인권의 대립관계는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인권보호에 직접적인 위협인 현대국가들의 안보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인간안보의 개념 대두 등 개인보호에 대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골간으로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하에 통제되고 있으며, 계급투쟁을 통한 적대계층의 제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사상은 수령론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사상 및 사생활까지 규제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성문화하였다. 사실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일론적 행위는 스탈린보다 더욱 혹독하다. 북한의 인권 개념의 특징은 ①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자에 한해서 부분적인 인권이 허용되고, ② 지도자의 시혜로 간주되고, ③ 계급적 성격을 띠고, ④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와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⑤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는 인권의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식량배급은 90년대부터 악화되어 95년부터 97년까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제적 지원으로 어느 정도 식량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매년 200만 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00년에도 수입과 대외원조를 감안하더라도 62만 톤 이상의 추가 식량이 필요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95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경제범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정치·사상범을 수용하는 곳으로 국가정보원은 10개의 수용소에 20만이 체제위해분자로 재판 절차 없이 집단수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15~2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를 선전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으로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희생되고 있다. 병원의 기자재 및 약품부족으로 무료치료는 상상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

기타 정치적·시민적 권리로써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종교의 자유와 권리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는 복수입후보제나 경쟁선거는 거부되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냉전종식후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힘입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남북 관계나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인권개선 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당국의 반인륜적 행위를 계속 묵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 북한에 정치적·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단계적인 조치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은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다 다자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기보다는 유엔, 국제NGOs, 특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NGO들의 대북인권 개선 활동은 북한에게 상당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일, 유럽연합(EU) 등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고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 접촉을 원하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지역기구인 아세안 등에서 북한인권 문제등 지역인권문제를 거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

고 이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중에서 국내외 TV등 미디어의 활용이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의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21세기에는 인권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의제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될수 있도록 민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 통일원, 1994.
- 아시아감시위원회,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_____.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 Brezek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 New York: BasicBooks, 1977.
- Cranston, Maurice. *What are Human Rights?* New York: Basic Books, 1964.
-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Fry, John. *The Helsinki Process*.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 Hoffmann, Stanley. *The Ethics and Polit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 Lee, Chong sik.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 Pye, Lucian W.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Robertson, A. H. and J. G. Mills. *Human Rights in the world*.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Shue, Henry. *Basic Righ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0.
- Solomon, Richard H.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

2. 논문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제2호, 1990.
- "김일성 혁명사상." 「철학사전」.
-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1982.3.31.
- Aslbright, Madeleine. "The Tes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7, No. 6 (November/December 1998).
- Bell-Fialkoff, Andrew. "A brier History of Ethnic Cleansing." *Foreign Affairs* Vol. 73, No. 3 (Summer 1993).
- Brezzezinski, Zbigniew. "New Dimension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Current* (September 1996).
- Donnelly, Jack. "Rethinking Human Rights." *Current History*, Vol. 95, No. 604 (November 1996).
- Falk, Richard. "The New Interventionism and the Third World." *Current History*, Vol. 98, No. 63 (November 1999).
- Gurr, Ted Robert. "Communal Conflicts and Global Security."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 Hannum, Hurst. "The Specter of Secession." *Foreign Affairs*, Vol. 77, No. 2 (March/April 1998).
- Hoffmann, Stanley. "China, the United States and Human Rights." *Dissent* (Spring 1997).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 Joffe, Josef. "Rethinking the Nation-State." *Foreign Affairs*, Vol. 78, No. 6 (November/December 1999).
- Klare, Michael T. "Redefining Security: The New Global Schisms." *Current History*, Vol. 95, No. 604 (November 1996).
- Krasner, Stephen D. and Froats, Daniel T. "Minority Rights and the Westphalian Model." in David A. Lake and Donald Rothchild (eds.). *The International Spread of Ethnic*

-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Rosenau, James N. "Security in a Turbulent World."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Redefining Security: The Human Dimension." *Current History*, Vol. 94, No. 592 (May 1995).
-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8." (February 26, 1999). [http://www.state.gov/www/global/human rights/1998 hrp report](http://www.state.gov/www/global/human_rights/1998_hrp_report).

3. 기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귀순자 인터뷰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공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계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사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99-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공저	6,000원
99-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여인곤·김국신·김영춘	공저	8,000원
99-25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모색	최의철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계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99-07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V):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9,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8 (1999)	10,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 901-2559, 901-2529 FAX : 901-2547)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인쇄/2000년 3월 23일

발행/2000년 3월 27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63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479-004-4

5,000원